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전 기 사 업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재생에너지 사용을 원하는 전기사용자의 발전원 선택권 보장 등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및 국내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및 전기사용자간 개별 계약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1천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가진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량을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직접 팔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전기판매사업자는 해당 전력을 전기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제1항 제3호 신설)

나. “전력거래 절차” 등에 “전기사용자”를 추가하여 해당 거래 참여자를 명확히 함 (안 제19조 제3항)

4. 주요토의과제 :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2020. 7. 14. ~ 8. 24.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단, 자가용설비 설치자는 제외한다)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발전사업자가 1천킬로와트 초과(의 발전설비용량(복수의 발전사업자의 발전설비 용량을 합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거래를 체결하고, 해당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제19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1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발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전기사용자 및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간의 전력거래와 관련한 대상·방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전력거래) ①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19조(전력거래) ① -----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신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단, 자가용설비 설치자는 제외한다)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발전사업자가 1천킬로와트 초과의 발전설비용량(복수의 발전사업자의 발전설비용량을 합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거래를 체결하고, 해당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발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간의 전력거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1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발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전기사용자 및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간의 전력거래와 관련한 대상·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④ ~ ⑦ (생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	
연 락 처	044-203-5179